**「사회복지법」**

[법률 소화26<1951>년제45호, 2017.6.2. 최종개정]

**□ 개 요**

일본의 사회복지법(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본 사회복지의 목적·이념·원칙과 대상자별 각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공통적인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장 13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第二章 地方社会福祉審議会****第三章 福祉に関する事務所****第四章 社会福祉主事****第五章 指導監督及び訓練****第六章 社会福祉法人**第一節 通則第二節 設立第三節 機関第一款 機関の設置第二款 評議員等の選任及び解任第三款 評議員及び評議員会第四款 理事及び理事会第五款 監事第六款 会計監査人第七款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第四節 計算第一款 会計の原則等第二款 会計帳簿第三款 計算書類等第五節 定款の変更第六節 解散及び清算並びに合併第一款 解散第二款 清算第一目 清算の開始第二目 清算法人の機関第三目 財産目録等第四目 債務の弁済等第五目 残余財産の帰属第六目 清算事務の終了等第三款 合併第一目 通則第二目 吸収合併第三目 新設合併第四目 合併の無効の訴え第七節 社会福祉充実計画第八節 助成及び監督**第七章 社会福祉事業****第八章 福祉サービスの適切な利用**第一節 情報の提供等第二節 福祉サービスの利用の援助等第三節 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事業を経営する者への支援**第九章 社会福祉事業等に従事する者の確保の促進**第一節 基本指針等第二節 福祉人材センター第一款 都道府県福祉人材センター第二款 中央福祉人材センター第三節 福利厚生センター**第十章 地域福祉の推進**第一節 包括的な支援体制の整備第二節 地域福祉計画第三節 社会福祉協議会第四節 共同募金**第十一章 雑則****第十二章 罰則****附則** | **제1장 총칙****제2장 지방사회복지심의회****제3장 복지에 관한 사무소****제4장 사회복지주사****제5장 지도감독 및 훈련****제6장 사회복지법인**제1절 통칙제2절 설립제3절 기관제1관 기관의 설치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제4관 이사 및 이사회제5관 감사제6관 회계감사인제7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제4절 계산제1관 회계의 원칙 등제2관 회계장부제3관 계산서류 등제5절 정관의 변경제6절 해산 및 청산, 합병제1관 해산제2관 청산제1목 청산의 개시제2목 청산법인기관제3목 재산목록 등제4목 채무의 변제 등제5목 잔여재산의 귀속제6목 청산사무의 종료 등제3관 합병제1목 통칙제2목 흡수합병제3목 신설합병제4목 합병 무효 소송제7절 사회복지충실계획제8절 조성 및 감독**제7장 사회복지사업****제8장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제1절 정보의 제공 등제2절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 등제3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자에 대한 지원**제9장 사회복지사업 등의 종사자 확보의 촉진**제1절 기본지침 등제2절 복지인재센터제1관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제2관 중앙 복지인재센터제3절 복리후생센터**제10장 지역복지의 추진**제1절 포괄적인 지원체제의 정비제2절 지역복지계획제3절 사회복지협의회제4절 공동모금**제11장 잡칙****제12장 벌칙****부칙** |